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09010038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09.08.24]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12.03]

<https://www.eie.co.kr>
 bs@eie.co.kr



정보공개서

[(주)코리아이앤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코리아이앤티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분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산학관 606-1,2호

전화: 1599-0572

팩스: 02-6416-0278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2-6416-0290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분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 - - - P.1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
(앞으로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이라 합니다)의 내용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 - - - P.5

1.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 날
2.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연혁
3.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업종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가맹분원 및 직영점의 총 수
5. 최근 3년간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가맹분원 수
6.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7. 가맹분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8. 가맹분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의 일반 정보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 기관
12. 가맹분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 - - - P.9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분원사업자의 부담 - - - - - P.10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 - - - **P.13**

1. 물품 구입 및 입차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영업지역 보호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7. 가맹분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 활동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 - - - **P.21**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분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 - - - **P.22**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 - - - **P.23**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의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 - - **P.24**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코리아 이앤피	EIE고려대학교 영어교육프로그램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산학관 606-1,2호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3.06.12	13.07.01	류 재 근	1599-0572	02-929-2290
	법인등록번호	110111-5155753	사업자등록번호	209-81-5920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주)코리아이앤피	EIE고려대학교 영어교육프로그램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산학관 606-1,2호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3년 7월 ~ 현재		류재근	1599-0572	02-6416-0278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하였습니다.

인수,합병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주)이아이이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2013년 7월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산학관 606-1,2호	류재근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프로그램]이라 합니다)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Excellence in English'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상 호	EiE 000 캠퍼스	'Express in English'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상표(서비스표)		서비스 등록번호 40-0843361-0000 40-0843362-0000 41-0206698-0000
		서비스 등록번호 40-1426294-0000 40-1426296-0000 40-1426295-0000
광고 및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총자산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17,926,958	12,169,105	5,757,852	9,584,251	2,025,971	1,765,727
2022년	18,204,945	12,698,269	5,506,675	10,345,680	1,993,534	1,282,044
2023년	20,877,277	14,669,113	6,208,163	10,002,193	1,880,803	1,147,461

○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류재근	대표이사	2013년 7월 ~ 현재	(주)코리아이앤피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류수현	사내이사	2023년 1월 ~ 현재	(주)코리아이앤피 사내이사	경영 및 사업지원
	송상균	사내이사	2023년 5월 ~ 현재	(주)코리아이앤피 사내이사	경영 및 사업지원
	유재성	감사	2021년 9월 ~ 현재	(주)코리아이앤피 감사	경영 및 사업지원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4		3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본부	(주)코리아이앤피	가맹사업경영	2013년 7월 ~ 현재	EIE고려대학교영어교육프로그램 (등록번호:20090100387)이라는 영업표지의 학원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류재근	가맹사업경영	2015년 10월 ~ 현재	EIE고려대학교영어교육프로그램 (등록번호:20090100387)이라는 영업표지의 학원가맹사업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여부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상표 및 서비스표	2009.07.10. 출원 2010.11.17. 등록	출원 제 40-2009003-2729 등록 제 40-0843361-0000	(주)코리아이앤피	2030.11.17.
		2009.07.10. 출원 2010.11.17. 등록	출원 제 40-2009003-2736 등록 제 40-0843362-0000		2030.11.17.
		2009.07.10. 출원 2011.02.10. 등록	출원 제 41-2009001-5645 등록 제 41-0206698-0000		2031.02.10.
	상표 및 서비스표	2018.03.23. 출원 2018.12.11. 등록	출원 제 40-2018003-7857 등록 제 40-1426296-0000	(주)코리아이앤피	2028.12.11.
		2018.03.23. 출원 2018.12.11. 등록	출원 제 40-2018003-7855 등록 제 40-1426294-0000		2028.12.11.
		2018.03.23. 출원 2018.12.11. 등록	출원 제 40-2018003-7856 등록 제 40-1426295-0000		2028.12.11.
	수업 스케줄 관리 시스템 (A management system for scheduling class)	2016.05.23. 출원 2018.04.09. 등록	출원 제 10-2016006-2946 등록 제 10-1848750-0000	(주)코리아이앤피	2036.05.23.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을 시작한 날: 2013년 07월 01일

(가맹분원을 시작한 날 : 2013년 7월 01일)

2.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코리아이앤피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국제어학원 프로그램	유재성	2013.07.01. ~ 2015.10.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산학관 302호
(주)코리아이앤피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국제어학원 프로그램	류재근	2015.10.02. ~ 2021.2.28.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산학관 606-1,2호
(주)코리아이앤피	EiE 고 려 대 학 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류재근	2021.03.01. ~ 현재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산학관 606-1,2호

3.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교육서비스	영어교육 프로그램

4. 다음은 당사의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 중인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가맹분원 및 직영점의 총 수입니다.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분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분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분원수	직영점수
전체	248	247	1	266	265	1	263	262	1
서울	24	23	1	26	25	1	26	25	1
부산	14	14	-	17	17	-	14	14	-
대구	18	18	-	20	20	-	21	21	-
인천	20	20	-	20	20	-	19	19	-
광주	7	7	-	9	9	-	9	9	-
대전	8	8	-	8	8	-	8	8	-
울산	4	4	-	5	5	-	4	4	-
세종	6	6	-	7	7	-	7	7	-
경기	54	54	-	58	58	-	56	56	-
강원	5	5	-	5	5	-	5	5	-
충북	10	10	-	10	10	-	10	10	-
충남	17	17	-	18	18	-	20	20	-
전북	12	12	-	12	12	-	12	12	-
전남	19	19	-	19	19	-	18	18	-
경북	13	13	-	14	14	-	15	15	-
경남	12	12	-	13	13	-	14	14	-
제주	5	5	-	5	5	-	5	5	-

5. 당사의 최근 3년간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가맹분원(직영점제외) 수입입니다.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19	42	0	14	9	247
2022	247	29	0	11	8	265
2023	265	12	2	13	18	262

6.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는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외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가맹분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가맹분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³⁾.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 산식 *

- 가맹분원의 연간평균매출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23년 총 가맹분원 중에서 미개원 또는 6개월 미만 운영매장을 제외하고 산출하였습니다.
- 당사의 교재 판매수량 대비 가맹분원의 매출액을 추정한 자료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분원의 평균 영업기간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분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분원 수 ^①	평균 영업기간 ^②
2023	262 개	1,921 일

9. 가맹지역본부의 일반 정보

-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도 말 기준으로 가맹지역 본부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번호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1	서울/경기/ 인천/강원/ 충남/충북/ 대전	총괄사업본부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산학관 611-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분원수	
		유재욱	02-6416-025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분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	○	×
2	경남/경북/ 대구/부산 /울산	영남본부	[부산사무실]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33번길 6(범일마제스타워) 103동 3223호 [대구사무실] 대구광역시 북구 중앙대로 513 대구오페라클래시아3차 428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분원수	
		우동균	02-6416-0258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분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	○	×
3	전남/전북/ 광주/전주/ 제주	호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114 랜드피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분원수	
		유재욱	02-6416-0254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분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	○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다음은 (주)코리아이앤피에서 2023년에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분원사업자와 부담하는 기준은 [20]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지역본부 포함)	가맹분원	
합계			566,038	566,038		
광고	(비공개)	2023.01.01. ~ 2023.12.31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판촉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기관

- 당사는 가맹분원 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 항목을 대체합니다.

12. 가맹분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가맹분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증권은 별지2 참조)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피보험인(보험계약자)	(주)코리아이앤피	가맹본부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분원사업자	
보험기간	계약일부터 2개월	
보장범위	가맹분원사업자의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 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분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보험대체가능금액	1억원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 해당 없음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해당 없음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해당 없음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보험대체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 세부기준은 가맹본부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영업표지 사용료	5,500	계약 체결 일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시 일부 또는 전부	영업개시 후
	오픈영업 지원비	3,300	계약 체결 일		영업개시 후
초도물품비	7,700	계약 체결 일	비치 전 계약해지	영업개시 후	
교육훈련비	16,500	교육 시작 일	교육일 전에 계약해지	교육시작 이후	
합계	33,000				

2) 보증금 : 해당없음

3) 가맹비의 예치여부 : 당사는 (주)서울보증보험과 가맹비의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였으므로 가맹비를 별도로 예치하지 않습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165m²(50평)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고
필수설비 (정착물)	가맹분원사업자 자율선정	10,000 ~ 15,000	-	-	간판 등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60,000 ~ 65,000	-	-	점포 면적 165m ² (50평)의 경우
시설 구입비		15,000 ~ 20,000	-	-	컴퓨터, 책걸상 등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1,000 ~ 1,500	-	-	소모품비, 사업자등록 등 대행료
총계		86,000 ~ 101,500			

- 위 표의 금액은 165m²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맹분원 규모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전면통유리공사, 전기증설 비용, 의탁자, 에어컨 등 기타 기본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및 사항은 별도로 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정하는 매뉴얼 및 설계 도면에 따라 설계 시공하여야 합니다.

5) 가맹분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분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지역지정 → 가맹희망자 직접조사 또는 가맹희망자가 전문업체에 의뢰 → 당사 및 가맹희망자가 동의 시 확정

6) 가맹분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분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학원운영 및 학원에 종사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7) 가맹분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가맹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교재 등 상품대금	㈜코리아이앤피	교재마다 상이	주문시	수강신청 후 4일 이내 (일할계산)	수강 신청 후 4일 경과	회원 1명당 1개의 ID
연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의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균등분담	광고실시일 이전	광고 취소	광고 실행 시	협약 후 실시
정기교육·훈련비용		200 이상	교육·훈련 실시 이전	교육훈련 취소	교육훈련의 실시	사전 고지
행사비용		가맹본부의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균등분담	행사 시행 이전	행사 취소	행사실행 시	가맹본부 30% 이상부담
재가맹비		1,800 (VAT 별도)	재계약 시	남은 계약기간비례	소진된 계약기간비례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비용은 가맹분원의 규모, 간판의 재질, 변경사유, 당사자의 귀책사유, 계약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당사는 귀하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가맹분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감독항목	내용	시기	비고
가맹분원 운영 점검	분원현황 파악 및 계약사항 이행점검	연 2회 이상	문의 : 사업부 (1599-0572)

- 당사 또는 가맹분원사업자의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당사는 가맹분원 감독 시 위생,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자재관리 분원운영 실태, 광고 및 홍보 현황 등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재계약 가맹금 일백팔십만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재계약(1년)	1,800	재계약 시작 30일 전	반환 불가	계약 이행을 위해 당사가 가맹분원사업자에게 지출한 소멸성비용	지연이자 없음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분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분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분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분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분원운영을 위하여 가맹분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권리 중에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분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분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분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분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분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가맹분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이 당사와 신규가맹 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가맹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개점에 필요한 교육 참가 등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 가맹분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지체없이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분원사업자는 위약벌 2,0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가맹분원사업자가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 상태를 고려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귀하가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분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귀하가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당사는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가맹분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 상대방이나 가맹분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가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가맹분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분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교재 및 문제지, 상담자료, 기타 캠퍼스 운영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및 자료	본사에서 제공하는 상품, 용역 이외의 것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1차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2차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거절 or 해지	특별한 경우 본사와 상담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분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운용하여야 하고,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 제공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품목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프로그램운용 및 콘텐츠판매	중학교3학년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만 운영	1회 위반: 1차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2차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거절 or 해지	특별한 경우 본사와 상담
영업권 준수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권 밖의 영업 및 다른 가맹분원 영업권 침해	1회 위반: 1차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2차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거절 or 해지	특별한 경우 본사와 상담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대방을 대상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제한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분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분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분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분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가맹분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초등부/중등부 영어학원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1점포 당 영업권 내 초/중등학교 2~3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분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사유발생 → 당사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분원사업자에게 서면통지 → 가맹분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점포 입점가능)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가맹분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분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분원 사업자 상호간의 이해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분원사업자가 다른 가맹분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분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분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분원사업자가 다른 가맹분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EIE고려대학교 영어교육프로그램]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분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다른 가맹분원의 영업권을 침해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가맹분원의 영업권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 시정요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 계획 및 다른 가맹분원 영업권내 보유 원생의 명단을 제출해야하며 해당하는 원생당 수강료 70%를 손해를 받은 가맹분원에게 지급한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 부당하게 가맹분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첫째, 가맹본부가 가맹분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 둘째, 가맹분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셋째, 가맹분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분원 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5) 가맹분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분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가맹분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분원 등을 통해 가맹분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분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분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년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분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99%	1%	0	0

2) 바로 전 사업년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E고려대학교 영어교육프로그램]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분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분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분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분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분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1조 1항 1호
2) 가맹사업 및 브랜드 통일성 유지 위해 가맹분원의 노후시설이나 설비의 보수, 영업표지 및 인테리어 일부가 변형에 따른 변경 등의 요구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1조 1항 2호
3) '다른 가맹분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1조 2항 2호
4)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업방침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1조 2항 3호
5) 가맹분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1조 2항 4호
6) 품질동일성을 위해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1조 2항 5호
7)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1조 2항 6호
8)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1조 2항 7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당사자간 더 이상 신뢰에 의한 가맹사업거래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32조 1항 1호
2) 대금을 계약기간 내 2회이상 연체하는 경우	32조 1항 2호
3) 정당한 사유없이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2조 1항 3호
4)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가맹분원 위치를 변경 및 양도하는 경우	32조 1항 4호
5)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2조 1항 5호
6) 계약위반 사실에 대해 시정요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2조 1항 6호

- 다만, 가맹분원사업법 시행령 제 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즉시 해지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시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파산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처리 등의 경우	32조 2항 1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2조 2항 2호
○ '을'이 가맹분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분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2조 2항 3호
○ '을'이 가맹분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2조 2항 4호
○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을 연속으로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32조 2항 5호
○ '을'이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분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2조 2항 6호
○ '을'이 가맹분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2조 2항 7호
○ '을'이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분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할 날로부터 1년 (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갑'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2조 2항 8호
○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상품공급 및 경영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32조 2항 9호

- 귀하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90일전에 당사에 계약해지의 내용을 통보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당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귀하는 즉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가맹분원사업자)	관련 계약조문
1) 파산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처리 등의 경우	32조 2항 1호
2)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2조 2항 2호
3) 정당한 사유없이 '을'에게 상품공급 및 경영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32조 2항 9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동 계약기간 중에는 기존 계약조건이 적용됩니다. 계약수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절차	동의절차
계약수정사유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분원사업자에게 서면통지 -> 가맹분원사업자 동의 -> 수정완료	수정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여부 회신·동이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분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분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분원운영권의 환매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분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분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분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분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계약 체결 → 가맹분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사업부 (1599-0572)

- 단, 양도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귀하에게 통지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는 양도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소정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 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가맹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양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미수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와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3) 가맹분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분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망시에만 가맹분원운영권이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 가능하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가맹분원의 승계의 의사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에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미성년 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인의 통지	모든 권리의무	상속자가 서면으로 상속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계약 체결 → 가맹분원운영권 이전완료	가맹분원사업자 사망시에만 가능
대리행사	불가능			
업무위탁	불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귀하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당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가맹사업과 동종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영어 학원	가맹분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여부 통지 → 완료	문의 : 사업부 (1599-0572)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 ~ 22:00 (11시간)	일주일에 5일 이상 영업	문의 : 사업부 (1599-057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 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분원(영업장)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 또는 가맹분원사업자의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분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 당사는 전국적 또는 일부지역 내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광고 및 판촉활동의 지역 내 가맹분원 수와 각 가맹분원의 매출액에 따라 가맹분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분원사업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광고 성격	본사와 가맹분원간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광고	본사와 가맹분원간 50%씩 부담	광고 계획 공고 → 가맹분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분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가맹분원 모집광고	본사전액부담		
개별 행사		가맹분원 전액부담		월별 판촉 행사

2) 가맹분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개별 가맹분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분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에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사전 동의 내용	절차
광고기간, 광고지역, 광고내용(특히 브랜드로고 사용방법)	문의 : 사업부 (1599-0572)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분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분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각종 매뉴얼, 각종 교육자료 및 경영 노하우 등의 사업상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 타 가맹분원 운영에 사용 할 수 없으며,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를 제 3자에게 누설 할 수 없습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금액으로 산정하여 청구 할 수 있으며 가맹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가맹분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소정의 위약금으로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 (손해배상 및 위약금)

- ① '을'이 본 계약서 사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서 '갑'의 손해가 금전적으로 명백히 산정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을'은 일금 2,000만원을 위약별로 지불하기로 약정한다. 이때 실제 손해가 위약금보다 큰 경우에는 갑은 실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본 계약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등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이 있는 경우 그 이행지는 '갑'의 본점 소재지이며, 이행기일 이후 그 지연이자는 연20%로 한다.
- ④ '을'은 '갑'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분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분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6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60일 내외	134,700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60	
사업 설명·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가맹점 자료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D-59	
영업지역 선정 및 상권분석	-상권분석 및 입지선정	D-59~55	
최종 협의	-본사 심사 및 개설 승인	D-53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비 납부	-가맹계약 체결 및 본사 계좌로 가맹금 납부	D-50	33,000
점포 계약	-건물 임대 계약 체결	D-48	
점포실측/설계	- 인테리어 및 공사비 산출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45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 내외부 표식물(간판 등) 설치	D-40 ~15	
초도교재 제공	-전교재(상담용) 제공	D-35	
운영 및 수업교육	-강사 수업교육 및 원장 운영교육 실시	D-32	
개원마케팅	- 온/오프라인 홍보 진행	D-30	
시설 및 물품구입	- 컴퓨터, 책걸상 등	D-25	
시설공사 완공	가맹분원 시설공사 완료 (소방, 교육, 세무 등 인허가 사항 포함)	D-15	
안전보험가입	수강생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필수 사항)	D-7	200
점포 개설	가맹분원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분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분원 규모에 따라 소요비용의 금액과 지불하는 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당사는 가맹분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 당사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에 앞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분원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은 당사 또는 가맹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본원의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지 않으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본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본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가맹본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학부모설명회	가맹본원 개원 시 인력지원	가맹본원 개원 시 1회	개원 이후	실비	
지역광고비	광고비의 일부 지원	지역단위로 광고를 진행하고 참여 학원 전체의 당사 프로그램 사용을 80% 이상일 때	지원조건 충족 시	전체금액의 20%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본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본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본원 운영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본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본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부담	문의 : 사업부 (1599-0572)
가맹본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본원 운영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본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본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원부담(가맹비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 사업부 (1599-0572)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가맹본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없음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원장 교육	가맹분원 운영 전반	합숙 또는 집단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필수 교육
원장 정기 교육 및 세미나	영업활성화 방안 및 분원관리, 우수분원 사례연구 등	합숙 또는 집단 강의	매년	필수 교육
특별 교육	운영정책 고지 및 변경 등 운영·교육 우수사례 등 정보교류	합숙 또는 집단 강의	사전 고지함	필수 교육
신규 강사 교육	교수법 및 프로그램 사용법	합숙 또는 집단 강의	월 1회	필수 교육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EIE 고려대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신규 원장 교육	1일(8시간)	실비	개원이후 교육실시
원장 정기 교육	1박2일(15시간)	200	개원이후 교육실시
특별 교육	-	-	사전고지

- 교육이수는 세부사항에 따라서 최소시간 및 비용 등 달라지며, 내용확정 후 가맹분원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3. 교육 · 훈련의 주체

-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와 직원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분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 됩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당사는 귀하가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나 귀하나 귀하가 채용한 직원의 교육에 대한 이해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개점을 연기 또는 보류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갱신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육에 참여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강서 마곡직영 캠퍼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294, 401~403호 (마곡동, 마곡더블유타워)

상기 직영점 중 강서 마곡직영 캠퍼스는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6년 10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포함)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1599-0572)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 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ie.c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지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지 [3]

<가맹분원사업자의 인근 가맹분원사업자 현황>

당사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분원(직영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분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분원 전체)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점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No.	상호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별지 [4]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자문 확인서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체결 14일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분원 목록**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____년 ____월 ____일 가맹희망자 _____(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자문

※ 자문을 받은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 7일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본인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가맹거래사인 (_____)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은 날: ____년 ____월 ____일 가맹희망자 _____(인 또는 서명)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계약체결 1일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여야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가맹계약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은 날: ____년 ____월 ____일 가맹희망자 _____(인 또는 서명)

비밀유지 약속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공개서와 관련하여 귀사의 영업비밀 및 사업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가맹희망자 _____(인 또는 서명)

■ 가맹희망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택)		휴대폰번호	
주소			
가맹희망 지역			